

## 회원사를 위한 방송통신 법률 상식 ⑥

## IPTV 비대칭 규제의 문제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방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송을 내보내기는 하는데 이러한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이 인터넷 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방식, 즉 IP(Internet Protocol) 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IPTV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방송을 내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IPTV 서비스는 대부분 초고속인터넷상품과 IPTV 상품의 결합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최초 IPTV 서비스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는 방송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송법이 통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었고,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IPTV 서비스가 출범하면서 과연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중 어느 것을 IPTV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논란의 결과 현재의 IPTV 사업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결과 IPTV 사업법에는 방송법에는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규정(정당한 이유 없이 IPTV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이 존재하고, 역시 다른 IPTV 사업자가 방송에 필수적인 설비의 공동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며, 역시 방송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IPTV 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도 존재한다. 이외에 방송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의 규제를 거의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시 IPTV와 케이블TV 간의 규제의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동일하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은 IPTV사업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규제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유료방송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체관계는 케이블방송과 IPTV가 가장 가까운데 양자에 적용되는 규제가 서로 다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현재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법이 IPTV에 대해 더 완화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IPTV의 경우 방송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 금지규정이나 결합판매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제공에 관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머리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IPTV 사업자에게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전에 이 칼럼에서도 다루었던 사실상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IPTV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케이블TV와 IPTV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제 차이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사업자로서 전국 77개 권역 내에서 3분의 1 이상을 겸영할 수 없는 반면 IPTV 사업자는 전국사업자라는 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IPTV 사업자가 전국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칼럼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다. 이외에, IPTV와 케이블TV는 모두 요금승인제를 택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상 케이블TV는 요금승인이 상한승인방식을 택하고 있고, IPTV는 정액승인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금승인방식의 차이도 IPTV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의 가장 큰 차이는 전국규모의 사업이 가능하냐의 여부일 것이지만, 케이블TV는 적어도 지역 내에서는 독점권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및 IPTV 역시 유료방송 가입자 수 1/3이하라는 점유율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역시 IPTV가 케이블TV에 비하여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케이블TV 전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 전화서비스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결국 최근 논의되는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의 비대칭문제는 현재의 법령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케이블TV 업계는 당연히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이러한 우위는 당연히 장기기간의 방송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양질의 콘텐츠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통신시장에 진출한 것이고, IPTV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유료방송시장에 진출한 것인데, 소비자 자신이 IPTV로 제공되는 유료방송과 케이블TV로 제공되는 유료방송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Comcast나 Time Warner와 같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영역에서 오히려 AT&T나 Verizon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IPTV건 케이블TV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설정을 하는 소위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인해 상대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비자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유사한 질의 유료방송을 시청할 기회를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의 비대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0년 12월 13일,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디지털미디어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